

대한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 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있을 언론 조정·중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우선 새 언론중재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포털의 속성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는 기존 언론매체와 여러 차원에서 크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다룸에 있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나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어 본고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과 2009년의 개정 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까지 있었던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법제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 입장에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포털뉴스에 대한 조정·중재 방향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역할,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

1)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여론 결집 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존 전통 대중 매체에 비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소통 매체로서 갖는 장점 혹은 특성 때문일 것이다. 우선 기존 매체는 소수의 정보제공자가 자본이나 정보를 독과점하고 중앙집권적이었다면 인터넷 기반 정보제공자는 다수이면서 분권적 형태의 권력구조를 띠고 있다. 즉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 개인들에게 무한대의 가상의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형성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공중의 참여를 촉진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무한대의 정보저장 능력과 하이퍼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일차원적이고 선형적이고 평면적인 형태의 기존 커뮤니케이션을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입체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멀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대중매체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었고 대중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면 인터넷은 탈대중화, 개별화

의 산물이고 이런 패러다임을 더욱 심화시킨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매체는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과 같은 엄격한 국가통제 체제 하에 놓여있었지만 인터넷은 국제 네트워크 규약과 같은 최소한의 통제를 받을 뿐이다.

최소한의 통제 체제 하에서 무제한적인 접근과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여론을 결집시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명의 이슬람계 소년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고 변전소에 숨었다가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 10여 일 간 지속적으로 방화와 폭동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미 촛불집회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대선 때의 모바일 미디어와 인터넷의 시민동원 및 결집력은 놀라운 현상이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서울과 전국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 역시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꼽히기도 했다(이태희, 2008). ‘광우병 정국’의 진원지로 불렸던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영향력 높은 사이버 공간이 되기도 했다.

2) 인터넷 언론의 개념

21세기 초반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서비스 기능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인터넷 인프라의 확산은 물론 이용자의 통제가 용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제도권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제설정을 통한 대안언론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평가된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본격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초기 형태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에서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일간지 형태의 언론이라고 규정되는데(박선희, 2001), 언론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체로 주류 인터넷 언론, 인덱스형 인터넷 언론, 독립형 인터넷 언론, 토론/패러디 형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황용석, 2004). 여기에서 주류 인터넷 언론은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존의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인덱스형 인터넷 언론은 이런 기사를 매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박선희 & 주정민, 2004).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 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선희 & 주정민, 2004).

특히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등 다원적 정보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황용석, 2003)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수 만명의 시민 기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함은 물론 댓글 달기 등과 같은 이용자 피드백 기능 등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류에서 멀어져 있던 개인이나 계층의 표현의 자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여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유·무형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압박이나 출입처제도와 같은 기존 언론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기반 언론의 등장은 또한 이에 대한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누리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담당토록 할 수 있는 법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3. 인터넷과 언론 중재법

1) 2005년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2005년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 법률들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박선희, 2008). 하지만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피해구제의 길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